# 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44호

## 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| 제재대상 | 내용(회사명, 성명 등) |
|---|---|
| 기 타 | ㈜휴림에이텍<br>이창현((주)휴림에이텍 前 대표이사)<br>㈜비에스제이홀딩스 |

## 2. 조치내용

□ **(금감원 원안)** ㈜휴림에이텍 과징금 2,980만원
이창현 과징금 890만원
㈜비에스제이홀딩스 과징금 2억 510만원

□ **(원안의결)** ㈜휴림에이텍 과징금 2,980만원
이창현 과징금 890만원
㈜비에스제이홀딩스 과징금 2억 510만원

## 3. 조치이유

### 가. 지적사항

□ ㈜휴림에이텍 등 : 정정신고서(분할) 중요사항 거짓기재

○ 회사는 ’21.5.18. 회사의 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’21.6.23. ~ ’21.6.24. 기간 중 자회사였던 ㈜비에스제이홀딩스(舊 두올물산㈜) 주식 83,006,958주를 전부 매도하였음에도 ’21.6.25. ~ ’21.7.9. 기간 중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정신고서에 ㈜비에스제이홀딩스를 100% 자회사로 거짓기재한 사실이 있음
(당시 대표이사 이창현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 부과)

□ ㈜비에스제이홀딩스 : 증권신고서(합병) 제출의무 위반

○ 회사는 두올물산홀딩스㈜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’21.11.2. 두올물산홀딩스㈜의 주주 약 1.1만명에게 합병으로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 83,006,958주(약 85.5억원)를 교부하기로 주주총회 결의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(합병)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## 나. 근거법규

□ 정정신고서(분할) 중요사항 거짓기재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19조 제1항 및 5항, 제122조 제3항, 제429조 제1항 제1호, 동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

□ 증권신고서(합병) 제출의무 위반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9항, 제119조 제1항, 제429조 제1항 제2호, 제430조 제3항,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4항, 제120조 제1항